

# 工業所有權審判事例

國內事件

特許 拒絕査定

〈大法院 第3部 判決〉(1986. 10. 14)

事件番號 : 83 후 74

裁判長 : 정 기 승

關與法官 : 김 달 식 · 박 우 동

1. 出願人(上告人) : 金星通信(株)
2. 相對方(被上告人) : 特許廳長
3. 原審決 : 特許廳 1983. 7. 19字, 1982年 抗告審判(絶) 第533號 審決
4. 主 文 : 原審決을 破棄하고 事件을 特許廳 抗告審判所에 還送한다.
5. 理 由 :

## 上告理由 第1點에 대하여

原審決이유에 의하면 原審은 1981. 2. 21(1981. 2. 20의 오기로 보인다) 出願된 本願發明은 實用新案公告 81—2002號 引用例로 부터 그 發明이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者가 용이하게 發明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舊特許法(法律第2658號) 第6條 第2項에 의하여 本願發明을 拒絕査定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.

그러나 위 特許法 第6條 第2項은 發明者가 그의 特許出願前에 그 發明이 속하는 技術의 分野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者가 국내에서 公知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發明, 國內 또는 國外에서 반포된 刊行物에 기재된 發明에 의하여 용이하게 發明할 수 있는 것을 出願한 때에는 特許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法條項을 적용하려면 引用例의 發明이 本願發明의 出願以前에 公知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것인지 여부를 審理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原審이 이를 審理하지 아니한 채 위 法條項을 적용한 것은 위 特許法 第6條 第2項의 法理를 오해하여 審理를 다하지 아

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. 論旨은 理由있다.

## 上告理由 第2點에 대하여

原審決의 理由에서 本願發明은 인용례로부터 용이하게 發明할 수 있다는 설명의 資料로 들고있는 美國의 刊行物인 내소날 세미콘닥터는 주지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그 예시로서 든 하나의 資料에 불과하므로 拒絕査定에서 들지 아니한 위 資料를 原審決이 거시하였다 하여 原審決이 拒絕査定과 다른 별개의 拒絕理由를 내세운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. 따라서 舊特許法 第134條 第82條의 규정에 의하여 出願人에게 意見書를 提出할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.

論旨은 理由없다.

이에 앞서서 든 理由로 原審決을 破棄하고 다시 審理判斷케 하기 위하여 事件을 原審에 還送하기로 하여 關與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.

〈8〉